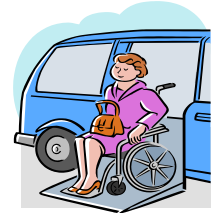


▶ 장애인 전용 차량(AAR)이란 무엇인가?

AAR이란 뉴욕 시 교통국(NYCT)이 운영하는 장애인을 위한 “보조 교통 수단”으로써의 차량 서비스를 말한다. 장애 때문에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뉴욕 시의 장애인을 위한 것이다. 장애가 있는 미국인들을 위한 법률 조항(ADA)에 따르면, (지하철이나 버스처럼) “정해진 구간”만을 운행하는 시



당국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해 전반적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거나 “보조 교통 수단”을 독자적으로 만들어 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뉴욕 시의 모든 5개 보로뿐만 아니라 웨체스터 카운티와 닷소 카운티 부분 지역에서 AAR은 일주일 7일 내내 24시간 동안 운행한다. 장애 정도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집 앞까지 운행해 주며, 다른 경우에는 “feeder 서비스 (장애인이 사는 집에서 쉽게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에만 장애인을 데려다 주는 운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편도 이용에 필요한 요금은 지하철이나 버스를 한번 이용하는데 필요한 일반 요금과 동일하다. (요금은 정확한 잔돈을 준비하여 지불해야 한다). Feeder 서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같은 목적지를 가기 위해 AAR과 버스를 둘다 이용했어도, 두번 요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으며, 대신 AAR이나 버스 요금중 하나만 선택하여 한번만 지불하면 된다.

AAR 서비스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면, **장애인 차량 이용 방법**이란 제목의 NYLI 설명서를 참고 하여라.

▶ 누가 AAR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일반적으로 AAR은 장애 문제로 경우에 따라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장애인 전용 차량이다.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자격 조건에 어떤 제한이 없으나; 정신적 혹은 심리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일시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장애가 있는 동안에는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만일 아래에 해당되는 어려움이 하나 이상 있을 경우에는 자격 조건이 될 수 있다:

- (1)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에 가기 위해 차량에 올라 가거나, 운전 하거나, 내려올 수 없는 경우
- (2) 독자적으로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에 가기 위해 차량에 올라 가거나, 운전 하거나, 내려올 수 는 있으나, 쉽게 갈수 없는 목적지에 가려고 할때
- (3) 날씨, 거리, 지형 그리고 방법등과 같이 장애 문제에 관련된 것 때문에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에 가고 오는 것이 불가능 할때

집 가까이에 있는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에 단순히 가고 오는 것만을 생각하지 말고, 모든 계절에 그리고 주어진 여건에서 다닐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해 보아라.

자격 조건이 되는 사람들의 사례:

- (1) 어떤 지하철/버스 정류장에서 타고 내리는 지 모르는 지능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 또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심각하게 걱정을 많이하는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
- (2) 휠체어를 사용하여 버스를 타고 갈 수는 있으나, 어느 특정 구간에는 접근하기가 힘들지만 지하철을 꼭 타고 가야만 하는 휠체어 장애인
- (3) 가파른 경사때문에 지하철/버스 정류장에 걸어 갈 수 없는 행동 제한을 받는 사람



▶ 어떻게 AAR을 신청하나?

AAR을 신청하기 위하여 AAR 자격 심사실 (877-337-2017, 1번 선택)에 전화하여 자격 심사를 하기위한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전화한 지 약 5일 후에 사전 예약이 접수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우편으로 신청서를 받게된다. 예약된 날에 작성한신청서를 가지고 와야 한다. 예약된 날에 건강 의료진과 면접을 하게 된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지를 시험하는 그런 평가를 AAR에서 하게 된다. 예약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지에 관하여 AAR에서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결정을 내릴때 까지 AAR에 관련된 서비스를 신청인에게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설명서는 단지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었다. 이것은 법적인 자료가 아니다.

참고 : AAR 을 이용하는 데 미 시민권자일 필요가 없으며, 체류 신분 에 관한 내용을 알려 줄 필요가 없다.

장애나 언어 장벽 때문에 그에 따른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자격 조건에 관련된 안내/자료들과 그리고 필요하다면 도움이 필요한 것들을 기입할 수 있는 양식등에 관하여 AAR 에서 알려줘야 한다. 자격 심사를 받기 위해 사전 예약을 한 경우 차량 편의를 AAR 에서 제공해야 한다. 예약한 날, 돌보아 주는 사람 (PCA)와 함께 올 수 있다 ; AAR 에게 사전에 통보하면 된다. PCA 는 가족의 구성원, 친구 또는 직업적인 전문가 그 누구나 해당된다. 영어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면 번역된 서류 그리고/혹은 통역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예를 들면, 예약한 날 통역사가 필요한 경우 AAR 에서는 반드시 통역사를 배석 시켜줘야 한다. 본인에게 통역사를 데리고 오라고 AAR 에서는 요구할 수 없으나, 만일 좋다면 본인 스스로 통역사를 데리고 갈 수가 있다. 만일 AAR 에서 통역사/번역에 서비스 제공을 거절한다면, 이러한 문제를 역점해두어 해결해 주고 있는 NYLPI (212-244-4664) 에 전화 하여라.

▶AAR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이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위에서 설명한 것 중 (“누가 AAR 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적어도 하나 이상의 자격 조건에 해당된다고 이를 증명해야 한다. 단순히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다니는 것이 좀 어렵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참고 : 이런 상관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짧게 설명 : “다발성 경화증이 있다”
자세한 설명 : “다발성 경화증이 있기 때문에, 피로하고, 움직이는데 제한을 받아 집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지하철 정류장을 가는데 언덕길 8블럭을 걸어갈 수가 없다, 혹은 계단을 오르 내릴 수가 없다. 한번에 몇분간을 오래 서 있을 수가 없다....” 등등

상관 관계에 대한 증명: 단순히 장애가 있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장애가 있어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다닐 수가 없다는 것과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다니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상관 관계에 대하여 잘 설명해야 한다. - 장애 때문에 왜 어떻게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다닐 수가 없는 지에 대한 설명을 말한다. 마찬가지로, 자격 조건에 관련된 3 번째 조건에 따르면 자격 조건에 해당되기 위하여 어떤 환경적인 상태나 변화가 있다는 것만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 하지 않다. - 즉, 장애 문제가 그러한 상태나 변화의 영향을 받아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에 가고 오는 것을 왜 할수 없게 만드는지 이를 증명해 보여야 한다.



제2 의 증상: 제 2 의 증상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주된 장애 요인이 다리가 쇠약해져 있는 거라면, 이에 따른 피로, 어지러움 또는 타고 다니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약에 대한 부작용등의 제 2 증상이 있을 수 있다.

도움이 되는 자료들: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은 자격 심사를 받는데 있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의사로 부터 본인의 장애 문제에 관하여 편지를 받는 것도 고려해 보고, 타고 다니는데 불편한 모든 것들에 대한 항목을 만들어 적어 놓아 참고 사항들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다. 의사로 부터 편지를 받는다면 본인의 병에 대한 진단이나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부탁 하여야 한다. -자세하게.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다니는 것이 장애 때문에 할 수 없는지 아니면 좀 어렵다는 건지 그에대한 상관 관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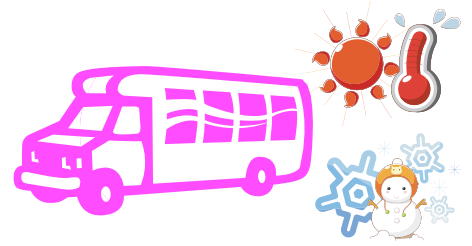


참고 : 의사 편지에는 다음의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상태가 어떤지 그에대한 목록을 만들고;
- 지하철이나 버스를 어떤 경우/항상 (지하철이나 버스 타고 다니는 것이그냥 힘들다고 하거나 , 단순히 AAR 에 추천한다고 쓰지 말고) 타고 다닐 수가 없다고 써 놓아야 하며;
-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다닐 수 없는 상태가 어떠한 지 정확히 설명하고 기술하여야 한다— 상관 관계를 자세히 설명하여 증명해야 한다!

▶ 어떤 종류의 자격 조건을 AAR 에서 결정하여 알려주나?

일반적으로, AAR 에서는 장애 상태에 따라 장애 차량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고 또는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알려 준다.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모든 교통편의를 AAR 로 부터 제공 받을 수가 있다. 그러나,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조건이 따른다. 예를 들면, 기상 상태나 거리에 따라 가까이 있는 지하철/버스 정류장에서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차량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제한을 둔다. 이런 자격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차량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feeder 서비스 (장애인이 사는 집에서 쉽게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에만 장애인을 데려다 주는 운행 서비스)” 를 이용할 수 있다.



어떤 종류의 자격 조건에서도 AAR 카드에는 유효 날짜가 적혀 있으며 이런 AAR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기 위해서 카드를 갱신하여야 한다. 새로 카드를 갱신하기 위한 절차는 처음 신청하는 절차와 똑같다. 카드의 유효 날짜가 지나 가기전 새로 갱신하여야 한다.



▶ 만일 본인의 신청서를 AAR 에서 거절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만일 본인의 신청서를 AAR 에서 거절한다면, 반드시 거절 통지문을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그 편지 내용에는 왜 AAR 에서 신청서를 거절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야 하며, 이런 결정에 청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 청원(우편으로)을 원한다고 편지를 보내 알려거나, 사람이 참석하는 공청회가 필요할 경우, AAR 로 부터 거절한다는 서신을 받은 지 60 일 이내에 요구 하여야 한다. 공청회에 참석하는데 또는 공청회가 계류중인 기간에는 AAR 에서 차량 제공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만일 청원 신청을 하고 난 후 진행 절차가 이루어지는 30 일 이내에 AAR 에서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때까지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억하라, 만일 AAR 에서 청원 신청 요구를 기각한다면, 일반적으로는 다시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주의 : AAR 에 청원할때 변호사가 필요 없다. 공청회를 요구한 경우, 본인을 도와주기 위해 변호사나, 가족 구성원 또는 친구처럼 본인을 변호할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올 수도 있다.

서면이나 사람이 직접 전달하여 청원 신청을 요구할 경우,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에 관한 내용들 보다도 더 자세한 내용들을 AAR 에 제공하여야 한다. 장애/신체적 장애 문제 때문에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다닐 수가 없다는 것과, 좀 어렵다는 상관 관계에 대해 특히 잘 설명하여 작성한 신청서의 내용들을 마음 속에 똑 같이 새겨둘 필요가 있다. 만일 할 수 있다면, 개인적인 면담을 할때나, 신체 기능에 대한 검사를 할 때 그리고 신청서 작성때, AAR 에 대해 본인이 요구하는 것을 왜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는지 설명할 수가 있다.

▶ AAR 에 관한 정책과 규정에 대하여 어디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나?



- <http://www.mta.info/nycct/paratran/guide.htm> 에서 “AAR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찾아 볼수 있다. 복사본이 필요한 경우, 877-337-2017 (1 번 선택) 에 전화하여 AAR 자격 심사 부서에 요구하여라.
- <http://www.mta.info/nycct/paratran/onthemove.htm> 에서 “On the Move” 라고 부르는 소식란을 찾아볼 수가 있다.
- 오디오나 안내문 혹은 소식란의 Braille 개정판이 필요한 경우, 718-393-4133 으로 전화 하여라.




경우,

이 설명서는 단지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었다. 이것은 법적인 자료가 아니다.

▶AAR 서비스에 만족하지 않거나 차별 당했다고 소송을 하고 싶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소송 성격에 따라 이런 소송을 담당하는 여러 기관이 있다.

<p>뉴욕 시 교통 차량국 (“NYCT”)</p>	<p>운전 기사가 불손하거나 위험하게 운전하는 등 AAR 의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이에 대한 소송을 원한다면 NYCT 에 소송을 접수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전화</u> : 511 로 전화하여 MTA 뉴욕 시 교통 차량국의 고객 지원실에 보고하거나 • <u>서신을 보낸다</u> : MTA New York City Transit , Paratransit Division, Customer Relations, 130 Livingston Street, Brooklyn, NY 11201 • <u>이메일</u> : www.mta.info 를 찾아 <u>Contact Us</u> 를 클릭한다.
<p>연방 교통 차량 행정국 (“FTA”) 인권 사무실 (“OCR”)</p>	<p>AAR 서비스의 문제점들 :</p> <p>ADA 그리고 1973 년에 제정된 복권 조항과 관련된 504 항에 따라 관련 업체가 규정을 위반 하였던 지를 FTA 에서 조사한다. FTA 에서는 소송한 사람이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는 지 다시 검토하지 않는다. : 단지 AAR 서비스를 운영하는 관련 업체가 법 규정을 준수하여 영업하고 있는 지에 대한 조사를 한다.</p> <p>어떻게 소송을 하는 가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는 : http://www.fta.dot.gov/civilrights/ada/civilrights3889.html 를 참고 해라</p> <p>인종, 피부 색깔 그리고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 :</p> <p>1964 년에 제정된 인권법 Title VI 에 따라 인종, 피부 색깔 그리고 출신 국가 (영어에 대한 언어 장벽도 포함하여) 때문에 차별 당했는 지를 FTA 에서 조사한다. 어떻게 소송하는 가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는 : http://www.fta.dot.gov/civilrights/ada/civilrights3889.html 를 참고 해라</p> <p>뉴욕 지역 FTA 사무실: <u>전화</u>: (212) 668-2170. <u>청각 장애용</u>: (800) 877-8339</p> <p>주의 : FTA 에 소송을 접수 시킬 수 있는 마감 시간은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한 지 180 일 이내에 시작하여야 한다</p>
<p>법정 소송</p>	<p>모든 법적인 소송은 문제점이 발생한 뒤 주어진 시간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러므로 변호사를 빨리 선임하거나 그리고/혹은 소송에 필요한 조치를 빨리해야 한다.</p>

<p>질문이 있다면?</p> 	<p>NYLPI 에 (212) 244- 4664 (일반 통화) 나 (212) 244-3692 (청각 장애자를 위한) 에 전화 하여라. 월요일과 금요일 (오전 9:30 부터 오후 1:30) 그리고 수요일 (오후 1:30 부터 오후 5:30) 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다. www.nylpi.org</p>
--	---

이 설명서는 단지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었다. 이것은 법적인 자료가 아니다.